

의안번호	제 410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발 의 자	오영탁 의원 등 6인
발의연월일	2020년 4월 13일

충청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오영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0
----------	-----

발의연월일 : 2020년 4월 13일
발 의 자 : 오영탁, 이수완, 윤남진,
김기창, 연종석, 김영주

1. 제안이유

충청북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다. 교통안전 시책 수립·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마.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바. 운전면허를 가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다. 협의 : 균형건설국 교통정책과
- 라. 조례안 예고 : 2020. 4. 6. ~ 2020. 4. 12.(의회 홈페이지)

충청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추진체계 구축 및 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통한 충청북도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3. “민간단체”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교육) 도지사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등) 도지사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단체 또는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 행사 또는 사업
2.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3.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4.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권장하는 사업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 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 향상을 위하여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포상과 관련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항행·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22조(교통시설의 정비 등) ① 국가등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의 정비(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정비를 포함한다), 교통규제 및 관제의 합리화, 공유수면 사용의 적정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주거지·학교지역 및 상점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제23조(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①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의 충실을 기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4. 22.,

2016. 1. 19.>

④ 국가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 4. 22., 2016. 1. 19.>

⑤ 제3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4. 22.>

충청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2. 비용 발생 요인

-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간단체 또는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원 및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지원

3. 관련조문

- 안 제5조(보조금 지원 등)
- 안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 재정수반 요인 :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등
1,625,645천원 정도 예상
- 추계의 전제 : 연중 1회
- 추계결과 :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325,129천원
- 재원조달방안 : 도비(일반회계)

5. 연도별 비용 추계서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등	1,625,645	325,129	325,129	325,129	325,129	325,129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출	325,129	325,129	325,129	325,129	325,129	1,625,645
· 교통사고 줄이기 범도민 결의대회(기 지원 중)	7,000	7,000	7,000	7,000	7,000	35,000
·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비	318,129	318,129	318,129	318,129	318,129	1,590,645
	- 106,043명*/65세 이상 × 100천원/인 × 10%/년 = 1,060,430천원 * 2019. 12월 말 기준 운전면허 소지자 - 1,060,430천원 × 30% = 318,129천원/년 ※ (부담비율) 도(30%) : 시군(70%)					

※ 도 예산담당관실 비용추계 검토의견(도 예산담당관-4406(2020. 4. 9))

○ 운전면허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 자진반납 연령 기준 : 경제·사회활동 등을 고려할 때 연령기준 상향조정 필요(조례안: 65세 이상)